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나.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라.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결과 규제 비대상으로 통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본문 중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을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전단 중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각각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목 전단 중 “60+방화문,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전단 중 “층에”를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제24조제12항 본문 중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시험한”을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한정한다]으로”를 “한정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화유리창으로”를 “방화유리창호로”로 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각각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1의 용도구분의 벽의 내벽의 비내력벽란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중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 품질관리서”로 하고, 자재개요의 “실물모형시험 여부(복합 외벽 마감재료)”를 “실물모형시험 여부(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하며, “외벽단열재 제조업자”를 “외벽 복합마감재료 제조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략)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 제1호의 <u>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u>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 <u>60분방화문</u> ”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	바. ----- ----- ----- ----- ----- ----- -----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 ----- ----- -----.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을 설치할 것	나. ----- -----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u>60+방화문, 60분방화문</u>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	자. ----- ----- -----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 ----- ----- <u>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u> ----- ----- -----.

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 ----- ----- ----- ----- ----- -----.
차.·카. (생 략)	차.·카.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② (생 략)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을 설치할 것	4. -----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	②-----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 -----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장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장의 기준) ----- ----- ----- -----.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	1. ----- 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 ----- -----

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을 설치할 것	3. ----- ----- -----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생 략)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 ----- ----- ----- -----.
1. <u>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u>	1. <u>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u>

	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⑪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u>방화유리창</u>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u>시험한 결과</u>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u>한정한다</u>]으로 설치해야 한다.	⑫ ----- ----- ----- ----- ----- ----- ----- <u>방화유리창호</u> ----- ----- ----- <u>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u> ----- - <u>한정한다</u>]로 ----- -----.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u>방화유리창</u> 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u>방화유리창호로</u> -----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말한다.	-----.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생 략)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u>60+방화문</u> 또 는 <u>60분방화문</u> 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 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 ----- <u>60분+ 방화문</u> 또 는 <u>60분 방화문</u>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생 략)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출입구에는 <u>60+방화문</u> 또 는 <u>60분방화문</u> 을 설치할 것	나. ----- <u>60분+ 방화문</u> 또 는 <u>60분 방화문</u>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1. 일반기준

(단위 : 시간)

용 도			구성 부재		벽						보 · 기둥	바닥	지붕 · 지붕 틀
					외벽			내벽					
					내 력 벽	비내력벽		내 력 벽	비내력벽				
연소우려 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 가 없는 부분	경계벽	승강기 · 계단 실의 수직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m)										
일 반 시 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 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탁시설, 자동차 관 련 시설(정비공장 제 외),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12/50	초 과 이 하	3	1	0.5	3	2	2	3	2	1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 거 시 설	단독주택, 공동주 택, 숙박시설, 의료 시설	12/50	초 과	2	1	0.5	2	2	2	3	2	1	
			이 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산 업 시 설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12/50	초 과	2	1.5	0.5	2	1.5	1.5	3	2	1	
			이 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1	0.5	

2. 적용기준

가. 용도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계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복합 마감재료 품질관리서

제출인 (건축주)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공사현장	현장명					
	대지위치			지번		
자재 개요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용도 ☐ 외단열 ☐ 내단열	결면 표기 여부	☐ 예 ☐ 아니오		단열재 밀도(단위:K)	
자재 개요 (다수의 재료가 결합된 제품인 경우 추가 작성)	단열재의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실물모형시험 여부 (외벽 복합 마감재료)		☐ 예 ☐ 아니오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성적서 번호
	외벽 마감재료 세부 구성 (예시) 단열재 150mm 두께 의 준불연 PF보드 복합패널 (알루미늄패널 0.5mm + 준불 연 글라스울 50mm 심재 + 알루미늄패널 0.5mm)		1. 시공 방식 ☐ 건식 ☐ 습식 2. 단열 종류 ☐ 외단열 ☐ 내단열 3. 단열재 두께 mm		4. 최종 마감재료 가. 마감재종류 나. 두께 mm 다. 마감재료제조업체	5. 마감재료 난연성능 ☐ 불연 ☐ 준불연 ☐ 난연 6. 단열재 결면 정보표기 여부 ☐ 예 ☐ 아니오 7. 단열재 밀도(단위:K)
외벽 복합 마감재료 제조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m ² 를 ☐ 자재유통업자 ☐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했음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로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속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재 유통업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m ²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소속	
	로트번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				
공사 시공자	성명	생년월일			성능을 갖춘 단열재 m ² 를 인수하였음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번호 :)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	
공사 감리자	성명	자격번호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사무소명	신고번호			소속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건축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1. 첨부서류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각 제출합니다) 시험성적서 사본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사본
2. 이 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합니다.